

대전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가단1152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2. 2. 1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압구 순위번호 5번 피고 1/2 지분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2. 9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9. 접수 제70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피고와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2014. 2. 24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씩을 취득하였다.

○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28.자 2017차전80811 지급명령으로 C에 대하여 10,813,617원 및 그 중 2,641,65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받았다.

○ 망인은 2019. 12. 9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아들인 C, E가 있다. 피고는 2019. 12. 9.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. 6. 29. 접수 제707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○ C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지방세 과세사실, 부동산 소유사실이 없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대전 유성구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망인 1/2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인 2/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로서 C의 모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망인 1/2 지분 중 2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2. 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아파트 H동

[도로명주소] 대전 유성구 I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층 J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79.68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

대전 유성구 F 대 1244.6㎡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244.6분의 22.3712. 끝.

